

[상가매출사기] 커피숍 양도 권리금 목적으로 허위매출, 포스 조작 사안 - 포스조작

CCTV 등 직접증거 없는 상황에서도 사기죄 인정: 부산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

노4298 판결



사안의 개요 - 2개월 동안 매일 허위매출 포스 조작 but 직접 증거 없음

법원의 판단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결제하는 고객이 없음에도 다량의 영수증을 출력하는 행위는 전날 아르바이트생이 매장을 관리하는 동안 무료쿠폰 등을 통해서 판매된 커피 수량을 정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튿날 오전에 매출과는 상관없이 재고(수량) 파악을 위해 영수증을 출력하는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원심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 기재, 공판기록 75면), 오히려 경찰에서 제3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제가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방식으로 무료쿠폰 500매를 만들어 놓았고, 그 날 있을 무료쿠폰 고객을 예상해서 영수증을 미리 끊어 놓았다. 우리 매장만의 영업방식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74면), 그 진술이 반복되었고, 피고인 B은 경찰 제2회 조사를 받을 당시 저희들(피고인들) 매장에서 무료쿠폰을 발매하여 커피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포스기계에 매출을 잡기 위해 입력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바 있어(증거기록 107면), 피고인들이 다량의 영수증을 출력한 행위가 매출과 상관이 없다는 변소는 합리성이 없다.

② 한편, 피고인 A는 배달주문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현금결제이므로, 자신의 카드로 미리 커피 판매대금을 결제해두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단순히 자신의 영업방식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면). 그런데 배달주문을 미리 카드로 정산해 두는 영업방식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단체배달 주문 등을 카드로 미리 결제하였다면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할 당시 포스기계의 매출내역상 현금매출 비중이 약 90%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도 설명하기 어렵다. 이처럼 미리 카드로 처리하거나 미리 정산해둘 만한 필요성도 없다(피고인에게 카드 사용으로 인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됨에도 이를 감수하면서 굳이 현금 결제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신용카드보다 현금 매출이 더 많은 이유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저희들(피고인들) 매장이 이동식 카드단말기가 없고, 배달을 하면 현금으로 받는 등 주로 현금 손님이 많아서 그렇다"고 대답하였던바(증거기록 107면), 피고인들 상호간에 배달주문의 결제·정산 방법에 관한 진술도 모순되어 결국 피고인들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매장은 (일반)커피와 라떼를 구별하고 있고, 그 외 스무디, 에이드 등 음료 종류별로 매출내역을 구분하였는데, 포스기계의 매출집계표상 일반커피의 매출비중이 약 90% 정도로 라떼의 매출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매장을 양도하기 전 약 3개월 동안의 매출내역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장은 일반커피와 라떼의 매출비중이 6:4 정도인데, 온·오프라인으로 발행된 무료쿠폰의 수량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커피의 매출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피고인 A는 매출집계표상 일반커피의 매출내역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집계된 이유를 피고인 B이 매일 오전 정산하면서 일반커피로 잘못 분류하여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역시 재고관리를 위하여 다량을 영수증을 매출과 관련 없이 출력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장의 주된 수입(매출)이 월 1,100~1,200만 원 정도이고 담배 매출을 통한 부수적 수입은 월 400~7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그 중 담배 매출을 허위로 부풀린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며, 그 동기에 관하여 '2015. 2.말경 이 사건 매장을 처분하고자 내어놓았는데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담배 매출을 다소 과장하면 매장을 처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이를 부풀렸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51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장의 처분 자체를 위하여 매출

액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⑤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포스기계상 나타나는 매출내역을 제공받고 이를 기초로 매장을 인수하였던 것이고, 만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장의 매출실적을 조작한 사실 및 실제 매출액을 알았더라면 매장 자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허위 영수증을 끊는 방법 등으로 정상적인 매출액보다 부풀린 매출액이 약 30% 정도일 뿐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하기 전 직접 매장에 방문해보기도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7,4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7,300만 원)으로 이를 제3자에게 재양도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매출내역을 부풀린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요지 - 사기죄 인정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4298 판결

상가임대차보호법, 독점권, 권리금, 계약분쟁, 손해배상, 영업금지, 민사소송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